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201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6. 12. 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民 基

『201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79호로 2016년 11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영등포구의회 의결 후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① 【배드민턴 전용 실내체육관 건립】

- 관내 도림유수지 일부를 복개하여 365일 이용 가능한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여 구민의 건강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
-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유수지)을 입체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화

② 【인공 암벽장 건립】

- 관내 도림유수지에 국제 규격의 인공 암벽장을 설치하여 산에 가지 않고도 암벽 등반을 즐길 수 있는 장소 제공
-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유수지)을 입체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화

4.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 재산

① 배드민턴 전용 실내체육관 건립(지상3층)

- 1층 주차장, 2층 배드민턴장, 3층 관람실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백만원)	취득시기	취득 사유	토지 소유자
지목	소 재 지	건물면적(m ²)				
유지	대방천로 29-18 (도림동 254)	2,916	10,749	2018년4월	체육시설 확충	영등포구

② 인공 암벽장 건립 (지상3층)

- 외부: 암벽장
- 내부: 1층 관리사무실, 2층 실내 암벽장, 3층 교육실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백만원)	취득시기	취득 사유	토지 소유자
지목	소 재 지	건물면적(m ²)				
유지	대방천로 29-18 (도림동 254)	600	1,275	2017년6월	체육시설 확충	영등포구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0억 이상 공유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 먼저, 배드민턴 전용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 2015.9월 건립 타당성 용역결과 건립의 필요성, 입지분석, 적정 건축규모, 사업비,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제안되었으며, 2016.1월 지상1층 규모의 체육관 건립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가 당면과제로 대두되어 2016.3월 지상3층 규모의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2016.6월부터 도림유수지 복개공사 실시설계 및 체육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이 시행중이며, 2017.2월 유수지 복개공사 착공, 2017. 6월 체육관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18.4월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임.

2015. 9월	실내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함)
2015. 10월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적정)
2016. 1월	배드민턴용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계획 (지상1층)
2016. 3월	배드민턴용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계획 변경(지상3층)
2016. 6월	도림유수지 복개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치수과)
2016. 7월	배드민턴 전용 실내체육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건축과)
2017.2월~6월	도림유수지 복개 공사
2017.6월~ 2018.4월	배드민턴 전용 실내체육관 건축공사

- 소요예산을 분석해 보면, 총 107억 4,942만 원 중 도림 유수지 복개공사비 43억 원, 배드민턴 전용 실내체육관 건립 공사비 64억 4,942만 원이며, 재원별로 구분하면 시비는 58억 원, 구 자체재원 49억 4,942만 원(구비 36억 2,942만원 +기금 13억 2,000만원)임, 현재까지 시비는 53억¹⁾ 원이 재배정 되었거나 교부되었으며, 기금은 2015년 2,000만 원이 건립 타당성 용역비로 집행되었음.

1) 2016.2.5. 서울시 재배정: 도림유수지 복개공사 예산 43억 원
 2016.6.2. 서울시 교부: 도림유수지 배드민턴 조성공사 2억 6천만 원
 2016.10.21. 서울시 교부: 도림유수지 배드민턴 조성공사 7억 4천만 원

〈연도별 재원 현황〉

(단위:만원)

구 분	사업비	2015	2016	2017이후
계	1,074,942	2,000	530,000	542,942
시비	580,000		530,000	50,000
자체재원 (구비+기금)	494,942	2,000 (기금)		492,942 (구비362,942 + 기금130,000)

○ 다음으로, 인공 암벽장 건립 사업은

- 구민이 체육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림유수지에 국제 규격의 암벽장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2016.8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용역 등을 거쳐 2017년 6월까지 완료되는 사업임.
- 소요예산은 12억 7,5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지원 사업이며, 2016.9월 예산이 전액 확보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